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050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02.24

ley@ddfnb.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2.06

디디짐엔닥

정 보 공 개 서

[(주)디디에프엔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디디에프엔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41, 3층(논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 529-880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 529-8816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디디사업부 080) 700-2277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2014.05.16	2014.05.08	(주)디디에프엔비 사업자등록번호 264-81-34189 법인등록번호 110111-541678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가맹본부	(주)디디에프엔비	디디썸엔닭 외1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41, 3층(논현동)	
특수관계인 (임원)	임인엽(대표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임미자(사내이사) 김재충(사내이사) 오의성(감사)	임인엽	02-529-8800	02-529-8816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소		
계열회사	(주)에스앤큐 플러스	토프레소 외1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41, 지성빌딩 3층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임인엽	02-529-8800	02-529-8816
	법인등록번호		110111-4943422	사업자등록번호	106-86-88346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을 인수 · 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 · 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 · 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디디짬엔닭]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디디짬엔닭	Delicious Delight
상 호	디디짬엔닭 ○○점	가맹점이 사용하게 될 점포명
상표(서비스표)	디디 짬엔닭	등록번호(일자) 4018593210000(43류) (2022.04.21)
		

5.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370,484	788,560	581,924	6,467,810	-202,419	-246,359
2022년	1,255,044	636,005	619,039	6,489,441	-12,054	-15,367
2023년	1,015,036	400,464	614,572	5,473,956	-23,012	-9,052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영업표지별 매출액은 상하 5%정도의 허용오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롯이 닭요리
(2018.04. 정보공개서 자진취소)는 현재 가맹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가맹사업에 관련된 임원 (실제 임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포함)의 정보 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임인엽	2024.10~현재	(주)디디에프엔비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24.11~현재	(주)에스앤큐플러스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임미자	2024.09~현재	(주)에이치씨지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24.10~현재	(주)디디에프엔비 사내이사	업무관리
		2024.11~현재	(주)에스앤큐플러스 사내이사	업무관리
	김재총	2024.10~현재	(주)디디에프엔비 사내이사	업무관리
		2024.11~현재	(주)에스앤큐플러스 감사	업무관리
	오의성	2024.10~현재	(주)디디에프엔비 감사	업무관리
		2024.11~현재	(주)에스앤큐플러스 사외이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3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 영업표지	기간	사업내용
가맹 본부	(주)디디에 프엔비	디디치킨	2003.05~ 현재	디디치킨(등록번호:20080200132) 이라는 치킨 전문 가맹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에스 앤큐플러 스	토프레소	2012.09.01~현재	토프레소 (등록번호:20080100482) 라는 커피 전문 가맹사업 경영
		오! 커피랩	2023.08.17.~현재	오! 커피랩 (등록번호:20231625) 이라는 커피 전문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분류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등록
----	----	--------	------	-------	----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만료일 (사용기간)
디디 짐엔닭	43류	4020200229476 2020.12.15	4018593210000 2022.04.21	(주)디디에프엔비	2032.04.2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디디짬엔닭] 가맹사업 현황

1. [디디짬엔닭] 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2. [디디짬엔닭]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디디에프엔비	디디짬엔닭	오응서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길 10-10, 4층(개포동)
(주)디디에프엔비	디디짬엔닭	임인엽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41, 3층(논현동)

3. [디디짬엔닭] 업종

영업표지	업종	
디디짬엔닭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짬닭

4. 최근 3년간 사업년도 말[디디짬엔닭]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디디썸엔닭]가맹점 수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0	0	0	0	0
2023	0	0	0	0	0	0

6. 디디썸엔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 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당사	(주)디디에프엔비	디디치킨	20080200132	치킨	118/0	114/0	101/0
특수 관계 인 (계열 회사)	(주)에스앤큐플 러스	토프레소	20080100482	커피	184/-	159/-	129/-
특수 관계 인 (계열 회사)	(주)에스앤큐플 러스	오! 커피랩	20231625	커피	-	-	1/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 디디썸엔닭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영업중인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9. 가맹지역본부 현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디디썸엔닭과 관련하여 광고 및 판촉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광고 및 판촉	언론홍보, 판촉물 제작 등	2023.01.01. ~ 2023.12.31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비고
우리은행	양재남지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	1599-5000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우리은행	가상계좌 부여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예치금반환 통장사본, 연락처 및 이메일) 제출 시 → 예치금 가상계좌 부여 → 가맹금 입금
계좌 개설시 필요 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1) 우리은행 예치안내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계좌”를 발급 받아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1599-5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

습니다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디디썸앤닭]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000원]				부가세포함
가맹비	5,500,000원	오픈전		소멸성비용	
교육비	2,200,000원	"		소멸성비용	
개점행사비	0원	"		한시적면제	면제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원	계약종료 시 반환	금전지급의무위반, 손해배상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부가세포함)
합계	10,700,000원
최초가맹비	5,500,000원
교육비	2,200,000원
개점행사비	0원(한시적면제)
계약이행보증금	3,000,000원(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10평)기준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47,700,000원]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30,000,000원	3,000,000원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간판		5,500,000원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기기 및 집기류	협력업체 또는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10,000,000원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초도물품	가맹본부	2,200,000원		주문 시 선입금	
기타	각종 인허가, 철거비용, 가스 및 전기승합 공사 별도/ 부가세별도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영업팀 (전화 : 080-700-2277)	가맹희망자 희망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및 시장 분석 → 입지선정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확인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 · 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디디짬엔닭]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광고 및 판촉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디디짬엔닭	월 55,000원	당월 20일	없음	소모성 비용	
판촉 분담금	디디짬엔닭 또는 협력업체(미지정)	가맹점 사업자 부담액	판촉 내용별 웹사이트를 통한 사전 별도 공지	-	-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모바일상품권 등 수수료	디디짬엔닭 또는 협력업체(미지정)		별도 공지			
포스트프로그램 사용료	협력업체	월 22,000원	매월 25일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별도 공지	교육 전	교육 후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디디썸엔달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 및 점포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와 점포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점검사항으로는 영업, 서비스,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 관리 및 원/부자재관리 등이다.
(가맹계약서 제 22조에 근거)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연장함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은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맹금,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0조 (계약의 종료 및 조치)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로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상호, 상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이후 디디짬엔닭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 ② '가맹본부'는 계약종료와 더불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 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한다.
- ③ 제 1항의 철거/원상 복구의 비용 및 계약종료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디디썸엔닭]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디디썸엔닭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에 디디썸엔닭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디디썸엔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디디썸엔닭]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맹사업자는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영업지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한 또는 보호를 받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 기타 명성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자는 지정된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까만짬닭(한마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차 위반 : 구두 경고 2차 위반 : 재발방지 협약서 작성 등 서면 시정요구 3차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본사 공급 양념품목 및 사이드메뉴 판매가능
빨간짬닭(한마리)			
로제파스타짬닭(한마리)			
후루룩 순살 닭떡볶이 (중)			
후루룩 순살 닭떡볶이 (대)			
까만짬닭한마리+크림치즈볼(6알)			
빨간짬닭한마리+크림치즈볼(6알)			
로제파스타짬닭한마리+크림치즈볼(6알)			
까만짬닭한마리+후라이드치킨			
빨간짬닭한마리+후라이드치킨			
로제파스타짬닭한마리+후라이드치킨			
바사칸후라이드(뼈)			
양념치킨(뼈)			
간장치킨(뼈)			
크림치즈볼(5개)			
웨지감자			
치즈스틱(5개)			
양념소떡			
매운불맛소떡			
후루룩떡볶이(소)			
치킨무추가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제한

가맹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거래 상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까만짬닭(한마리)	26,000	웹사이트 및 서면안내	
빨간짬닭(한마리)	26,000		
로제파스타짬닭(한마리)	29,000		
후루룩 순살 닭떡볶이 (중)	19,000		
후루룩 순살 닭떡볶이 (대)	26,000		
까만짬닭한마리+크림치즈볼(6알)	30,000		
빨간짬닭한마리+크림치즈볼(6알)	31,000		
로제파스타짬닭한마리+크림치즈볼(6알)	34,000		
까만짬닭한마리+후라이드치킨	40,000		
빨간짬닭한마리+후라이드치킨	40,000		
로제파스타짬닭한마리+후라이드치킨	43,000		
바사칸후라이드(빠)	15,000		
양념치킨(빠)	17,000		
간장치킨(빠)	17,000		
크림치즈볼(5개)	5,000		
웨이감자	5,000		
치즈스틱(5개)	5,000		
양념소떡	3,000		
매운불맛소떡	3,000		
후루룩떡볶이(소)	5,000		
치킨무추가	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짬닭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디디짬엔닭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에 표기

※ 영업지역 설정 시 지형 및 상권의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권의 특성에 따라 귀하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 다만, 영업지역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종합병원 등의 대형건물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봅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

하는 행위

넷째,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매월 해당 가맹점 사업자의 3개월간 월평균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디디썸엔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정책에 따라 향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계약기간 및 갱신기간

[디디썸엔닭]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디디썸엔터테인먼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8]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제39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2)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동의 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가맹점 상호, 명칭 등 영업표지가 아닌 다른 가맹점의 상호, 명칭 등과 오인, 혼동케 할 수 있는 상호, 명칭 등 영업표지를 사용(광고, 전화 등 포함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및 관련된 내용(예 : 특약, 별도 약정서, 합의서, 동의서 등 기타 제반 문서)을 위반한 경우	제39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제39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9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9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5) 계약수정의 사유, 사전통보 여부 및 동의절차

당사는 계약기간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본부와 가맹계약자간 상호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계약내용의 변경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8조)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수정사유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수정계약서(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7. 가맹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일 소요) → 승인여부 통지 → 가맹본부 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문의 : 디디사업부 (02)529-8800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이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본인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가맹계약서 제41조에 근거)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찜닭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2:00~24:00(12시간) 낮 12시 오픈을 권장하며, 마감영업시간은 자율	주6일이상, 월 25일 이상	

- ① ‘가맹점사업자’는 주 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개장해야 하고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전항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의 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 31조에 근거)

- ③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해당사항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① 당사는 귀하의 경영활성화 및 점포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와 점포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부서	비고
영업, 서비스,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 관리 및 원/부자재관리 등	담당자 매장 방문 → 점검 또는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가맹본부	

- ② 당사는 귀하가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점검사항으로는 영업, 서비스,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 관리 및 원/부자재관리 등입니다.

(가맹계약서 제 22조에 근거)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디디찜엔닭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지역별 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판촉	전국 및 지역별판촉						
	개별판촉					-	100%

*가맹점 동의비율이 충족되더라도 당사의 사정상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매월 20일까지 오만오천원(₩55,000 / 부가세포함)을 당사에 광고비 또는 판촉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광고 또는 판촉 분담금을 경영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광고 또는 판촉 분담금을 당사에 지급하는 경우 상기 표에서 정한 분담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 25조에 근거)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에 귀하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 44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①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 희망자에 대하여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관계기관의 서면실태조사에 협조 등 정당한 업무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로 귀하의 가맹점이 개설될 때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9]일 정도가 예상되며, 그때까지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39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080-700-2277)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39	
사업 설명 · 상담	- 브로셔 및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제공 - 회사동영상시청	D-3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1차 시장조사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3(1일)	
가맹금 예치	- 우체국 또는 우리은행 가맹금 예치	D-22(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1(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17(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집기 입고	D-16(1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6일)	
오픈 준비	- 초도물량 입고 - 청소 및 집기점검 - 홍보 및 판촉	D-1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1. 상기 일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점포개발은 점포 미보유시인 경우에만 실시되며 상권분석 또한 필요시 실시합니다.

2. 가맹 본부와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위원회를 구성중입니다.

- ①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②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문의: (02-529-880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 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 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약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 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 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프로모션 등 비용이 발생시 가맹점 부담	문의: (02-529-8800)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회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홍보마케팅교육, 조리교육, 서비스교육, 프랜차이즈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교육, 수/발주 및 제품 특성, 장비/기기 관리교육 실시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디디점엔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조리교육 수발주 관련, 입금 방법 등	2일교육 실습교육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방문교육	수시교육	SC 방문 및 간담회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디디점엔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6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기본이론교육무료	SC 방문 및 매뉴얼 서면제공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어도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4. 교육 · 훈련의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포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가맹계약서 제 20조 ①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당사는 [디디썸앤닭]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디디사업부(080-700-227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원부재료 필수 공급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내역 중 거래상대방 권장품목을 지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 및 디자인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는 당사가 직접 수취하는 품목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액가맹금 수취품목은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귀하가 직접 자체조달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 시 차액가맹금 및 판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당사가 귀하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으로, 거래상대방에 따른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가 "X"로 표시되더라도, 협력업체로부터의 판매 수수료 수익, 재판매 수익, 또는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첨3] 주방기기 및 집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상기 품목 외에 당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품목이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